

2014년 대한국제법학회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방사능 오염 사건 (Republic of Allium/Ripluna)

1. 알리움국(The Republic of Allium) 과 리플루냐국(The State of Ripluna)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국가들이다. 리플루냐국은 남북의 길이 1200km, 최대 폭 200km, 면적 94,000km² 으로서 리플루냐국에서 가장 큰 섬인 라헤마할섬과 이 섬 주변의 크고 작은 2000 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라헤마할섬의 동부 연안은 알리움국의 서부 연안과 마주하면서 주로 양식업과 연안어업에 활용되고 있고, 라헤마할섬의 서부 연안 토호지역은 대양과 접하면서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알리움국은 1966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이후 원전 건설, 운영 분야에서 원전 선진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도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 알리움국 대통령 리트푸노는 ‘원전 수출 확대를 통한 해외건설사업 부흥’ 정책을 천명하면서, 원전수출에 대한 알리움국내의 반대 여론에도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동지역 몇 개 국가에서 알리움국 방식의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

리플루냐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자국의 원자력 건설 경력을 기반으로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활발히 하는 한편 원자력의 활용에 필요한 다수의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데 적극적이다.

1997년 5월, 리플루냐국은 자국의 동부 연안에서 약 300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로스토라 국에서 다수의 방사능폐기물이 방치되자 로스토라국의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속히 보강하여 로스토라국이 자국 연안에서 방치된 방사능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저준위방사능폐기물들이 자국 연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에 하나라도 리플루냐국의 동부 연안에 있는 양식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1998년 12월 리플루냐국은 로스토라국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약속하면서, 로스토라국이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1972년 협약) 및 1996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의정서,’(1996년 런던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신속한 가입을 촉구하였다. 2004년 7월 로스토라국은 리플루냐국이 주도적으로 요구했던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었다.

2.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모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있기에 다량의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양국 모두 지난 수십 년간 원자력 발전을 통하여 산업용 전기 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을 줄이고 견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 안팎으로 원자력의 효율성에 못지않게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있었지만 양국은 상호 관심사인 원자력이용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양자협정을 체결한 이래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였다.

1997년 협정에서는 양국의 원자력 분야 건설 사업이나 부품 소재 생산 사업 사이의 거래에는 세금감면이나 지사 설립 시 상호 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1997년 협정에서는 알리움국에서 리플루냐국으로 수출되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부품의 경우 알리움국의 공인된 기관에서 부품시험을 모두 거쳐서 안정성이 확보된 후 리플루냐국에 납품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알리움국에서 원자력 건설 및 운영, 부품 소재 제작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주식회사 플루토는 알리움국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경영진도 모두 전직 관료들이다. (주) 플루토는 리플루냐국내의 원자력 관련 사업체인 주식회사 우라와 합작투자회사 플루토-우라를 설립하면서 (주) 플루토가 (주) 플루토-우라의 주식 51%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주) 플루토의 리플루냐국 내 투자는 원자력 사업 분야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운영과 부품소재 공급 방식의 새로운 협력 방법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주) 플루토와 (주) 우라가 합작투자계약을 서명하는 자리에 알리움국 대통령과 리플루냐국 수상이 직접 참석할 정도였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주) 플루토-우라의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0년까지 리플루냐국 내에서 운영되는 원자로 중 40%에 대해서 원자로의 증기 발생기, 가압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주요 기기를 납품하면서 리플루냐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원자력 발전 사업체가 되었다.

3. 2011년 3월 9일 리플루냐국 서부 해안을 휩쓴 진도 9.0의 대지진과 해일로 이 지역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였다. 리플루냐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지진으로 인해 원자로의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을 멈추었고, 바닷물의 침수로 인해 보조냉각시스템의 해수펌프시설과 원자로 건물 지하에 설치된 비상디젤발전기 등이 가동되지 않았다.

- 그 결과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원자로 내부의 열이 상승하여 핵연료와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고, 원자로 압력용기와 격납용기에 균열이 생겼다.
- 압력용기에 주입된 냉각수도 압력용기 하단으로 누출되고 격납용기에서 발생한 수소가 원자로 건물 상부에서 폭발하였다. 이에 따라 핵 연료봉이 손상되고 노심이 녹거나 손상됨으로써 원자로 5기가 심각하게 파손되었다.

4. 한 달 후인 4월 9일,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은 이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국제원자력사고 등급(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중 가장 높은 단계인 7 등급에 해당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 당국이 5월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고 원자로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아이오딘 131이 15경 베크렐, 세슘 137이 1.4경 베크렐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같은 발표에 따르면,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새어나온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와 원자로 내부에 주입한 냉각수 등 1,000mSv/h 이상의 고농도 오염수가 격납용기에서 새어나와 원자로 건물과 터빈 건물에 고여 있다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3월 29일과 4월 5일 사이에 바다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의 양은 4,500조 베크렐로 추산된다. 고농도 방사능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자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은 저장 공간 확보를 이유로 4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약 1만 1천 톤을 바다로 배출하였으며, 여기에는 모두 1,500억 베크렐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5. 사고 직후 도서 국가인 리플루냐국의 동쪽에 위치한 알리움국 과 로스토라국을 포함하여 수개 국가들은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의 지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에 따라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사고 수습을 지원했으며, 사고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물자도 전달하였다.

6. 2011년 3월 원자력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리플루냐국 합동조사반은 원인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당연히 가동되었어야 하는 원자로 냉각장치가 사고 원자로에서는 가동되지 않아서 사고가 확대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리플루냐국 조사반은 사고 원자로 5기 중 3기에 대해서 (주) 플루토-우라가 건설, 운영을 맡았는데, 이들 원자로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원자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리플루냐국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고 그 이면에는 (주) 플루토-우라의 지주회사인 (주) 플루토에서 제작 공급하는 원자로 냉각 장치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리플루냐국 검찰은 (주) 플루토에서 제작하여 (주) 플루토-우라에 공급하는 원자로 냉각 장치의 부품검사서가 위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리플루냐국의 시민단체는 (주) 플루토-우라 회사 앞에서 진상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리플루냐국 수도인 토르시에서는 알리움 국민에 대한 중오 연설이 난무하고, 리플루냐국 내 알리움국 주민의 집단 거주 지역에서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7. 2012년 4월 12일 리플루냐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원자로 사고와 관련해서 1년여의 조사를 마무리하여 리플루냐국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원자로에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오염물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외교부 성명에서는 방사능 유출이 가장 많았던 원자로 제3기의 건설과 유지 보수를 맡았던 (주) 플루토-우라에게 가능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결함 있는 원자로 부품을 공급했던 (주) 플루토와 알리움국 정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리플루냐국의 외교부 성명에 대해서 알리움국은 즉각 반발하면서 리플루냐국 자신이 국제적으로 자랑했던 긴급사태시 대응 요령(사고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큰 사고를 초래해 놓고서 알리움국에서 제작하여 공급되는 부품 탓을 한다고 하면서 이처럼 리플루냐국이 자신의 원전 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이웃 국가에 떠넘기는 것은 양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표명하였다.

8. 2013년 8월 17일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은 사고가 발생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탱크에서 최근에 다시 300m³의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어 같은 해 9월 5일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은 오염수 유출 현황, 바다의 방사능에 관한 정보, 원자력규제당국에 의한 감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서한을 IAEA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또 9월 24일에는 사고 원자력 발전소 인근 해양의 방사능 정보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고,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이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의 누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결과를 담은 문서도 제출하였다. 이어 10월 2일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은 9월 27일 측정된 인근 해양의 방사능에 관한 자료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8일에는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누출된 오염수 외에 담수처리시스템에서도 오염수가 누출되었다는 사실도 보고하였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 외에는 리플루냐국이 이와 같은 사실을 별도로 통보한 바는 없다.

9. 최초 사고 발생 당시에는 방사능 오염을 문제 삼지 않았던 이웃 국가들도 이번에는 그러한 오염이 바다를 통하여 자국에까지 파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과 아울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리플루냐국의 적극적인 관리 부족과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이 1972년 협약 및 1996년 런던 의정서, 그리고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상의 여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9월 8일 사고 지역 부근 해역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동하였다.

10. 리플루냐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였기에 자국은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 회복과 오염물 제거, 그리고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알리움국이 리플루냐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세계무역기

구(WTO) 설립협정 부속 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리플루냐국은 성명서에서 제3기 원자로의 냉각장치에 부실한 부품을 공급한 기업은 알리움의 국영기업인 (주) 플루토, 그리고 리플루냐국 현지 합작투자회사인 (주) 플루토-우라였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 성명 발표 직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사이의 외교 교섭이 진행되었다. 교섭과정에서 양국은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관련 국제협약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일차적인 선결문제라는데 의견이 접근하였으나, 리플루냐국이 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투기가 아니며 런던의정서상의 의무와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교섭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1. 이 일련의 외교 교섭은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다만 마지막 교섭 말미에 알리움국 측 수석대표는 양국 사이에 발생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해양법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리플루냐국 측 수석대표는 만약 알리움국이 ICJ에 제소한다면 자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응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각각 유엔 해양법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때 이 협약 제287조에 따라 ICJ를 선택한다는 취지의 선언도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바 있다.

12. 리플루냐국과 알리움국은 각각 1956년과 1975년 이래 유엔 회원국이며, 두 나라 모두 1980년 1월 31일 이래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1972년 런던협약은 1980년 11월 14일 리플루냐국에 대하여, 그리고 1994년 1월 20일 알리움국에 대하여 발효하였다. 1996년 런던의정서는 2007년 11월 1일 리플루냐국에 대하여, 그리고 2009년 2월 21일 알리움국에 대하여 발효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은 1996년 10월 3일 리플루냐국에 대하여, 그리고 1997년 9월 22일 알리움국에 대하여 발효하였다.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모두 WTO의 원당사국이다.

13.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을 대표하여 알리움국 주 네덜란드 대사 피터 존스와 리플루냐국 주 네덜란드 대사 사무엘 앤더슨은 2014년 5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원고국과 피고국 사이의 이견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특별협정’에 서명하고 ICJ 사무처장(Registrar) 앞으로 원본 1부를 송부하였다.

[부록]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 사이의 이견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특별협정

알리움(Allium)국과 리플루냐(Ripluna)국은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이견을 양국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사안을 회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국은 ICJ 규정 제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ICJ가 판단해 주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 (1) 리플루냐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의 여부
- (2)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아서 유엔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 (3)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 사실을 인접국인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아서 유엔 해양법협약 제198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 (4)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에 대해서 리플루냐국의 위반이 있다고 확정될 경우, 리플루냐국이 그러한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제2조

양국은 알리움국이 원고국이고 리플루냐국이 피고국으로 불리더라도 이 특별협정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한 입증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다.

제3조

제1항

ICJ는 양국에 적용되는 조약을 포함하여 국제법 규칙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제2항

ICJ는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판결할 때, 양국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로 인한 법적 효과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

제4조

제1항

재판절차는 2014년 국제법 모의재판 공식 규칙에 따른다.

제2항

양국은 서면절차로서 각 당사국이 제출하는 준비서면을 2014년 국제법 모의재판 공식 일정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주도록 ICJ에게 요청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조

제1항

양국은 ICJ의 판결이 최종적이며 그 판결에 구속받기로 합의하며, 판결 일체를 신의칙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항

양국은 판결문 수신 즉시 판결 이행 방식에 대해서 교섭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특별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특별협정은 2014년 5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영어로 3부 작성하였다.

알리움국 주 네덜란드 대사 피터 존스

리플루냐국 주 네덜란드 대사 사무엘 앤더슨